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 등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7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7. 18.
3. 회 부 일: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제11제1항이 규정한 위험운전 치사상죄(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중 약물운전 부분을 분리하여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i) 치상의 경우 현행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ii) 치사의 경우 현행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안 제5조의11),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더욱 엄격하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u>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u>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u>음주의</u> ----- ----- ----- ----- ----- ----- -----.
② <u>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u>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u>음주의</u> ----- ----- ----- ----- ----- ----- ----- -----.
<신설>	③ <u>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

-----.

1. -----

-----3천만원-----

-----.

2. -----

-----3천만원-----

-----.

② -----

-----.

1. -----

-----3천만원-----

-----.

2. -----

-----3천만원-----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 관련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제1항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사상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함)상 처벌규정으로는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음주(약물)운전사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 12. 21.에 신설되었음.
- 본죄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달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함.¹⁾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관련하여, 약물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²⁾에 규정된 약물을 의미하는데,³⁾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적어도 「도로

1) 판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석함(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2)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3) 이주원, 특별형법 제8판(2022), 홍문사, 277면.

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⁴⁾ 제45조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보다는 중한 상태이므로, ⁵⁾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본죄의 ‘정상운전 곤란상태’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연간 발생 건수는 8천4백여 건에서 4천5백여 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사상의 연간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상응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약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2011~2021년까지 연간 위험운전치사상 발생 및 검거 현황>⁶⁾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	8,422	8,390	7,426	6,831	6,937	6,297	6,471	6,215	4,937	5,684	4,584
검거	8,396	8,343	7,399	6,812	6,911	6,275	6,451	6,198	4,930	5,663	4,556

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6) 경찰청 범죄통계(2011-2022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이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가법지 않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2007년 12월 21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신설 당시에는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故운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해지자 2018년 12월 18일 동법을 개정하여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미 한차례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바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 변동>

	2007. 12. 21. 신설 당시	2018. 12. 18. 개정 이후
치상	<u>10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u>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u> 또는 <u>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치사	<u>1년 이상의 징역</u>	<u>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u>

또한, 판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⁷⁾ 이 경우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⁹⁾ 이와 같은 경합범 가중이 약물운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음주”와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달리,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보다 상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¹⁰⁾ 등을 토대로 하여 양자 간의 법정형을 달리 하는 것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판결.

8)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9) 이와 같이 판례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함으로써 처벌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주현경,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통권 65호(2015), 186-188면]. 이 견해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로 보는 판례와는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운전이라는 위험범을 기본범죄로 하여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법조경합 관계이며, 따라서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임.

10) 현재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하여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의 상대적 위험성 크기 등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찾기는 어려운바,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일본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 제2조제1호-치사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https://laws.e-gov.go.jp/law/425AC00000000086/20200702_502AC00000000047

2)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에 있어 가액요건 강화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¹¹⁾ ① 본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

- 11)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알선의 행위를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약류관리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의 가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본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 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 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죄만 해당하고, 대마사범은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소지 등을 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제1호),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제2호)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제58조, 제59조 또는 제60조)이 적용됨.¹²⁾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가액요건	법정형
제1항	제1호	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2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제2항	제1호	5,000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제2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본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코카인의 경우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12) 이주원, 특별형법 제8판(2022), 홍문사, 354면.

가변적 요소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암거래 시세나 실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고, 결국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소매업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없어 소매가격은 없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국내도매가격에 따라 코카인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¹³⁾

- 개정안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의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각각 강화하여 구성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것인바, 최근 몇 년간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와 사회에 지극히 큰 해악을 미침을 고려할 때, 가액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¹⁴⁾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764	9,984	11,916	14,214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1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3. 12.-2022. 12.),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70호(2023. 3. 1.)에서 재인용.

○ 다만, 본조에 따른 현행법상 처벌은 모두 무기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3년, 7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에 해당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가액이 500만원 이상만 되면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본조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데,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는 가액요건을 낮추어 현행보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형벌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합리적인 처벌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산정 기준인 국내도매가격 변동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02)6788-5056